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 <개정 2012.6.29>

지급 보증서

신청인	대상구분	보훈번호
	성명	생년월일(성별) ( )
	주소	전화번호
지급보증 내역	지급보증기간 부터 까지	
	지급보증금액	
	대부종류	
대부재산 표시	소재지(지목, 면적)	
매도자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	계좌번호	
지급보증 내용	귀하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금 지급신청 후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대부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기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할 것임을 보증합니다. 이 경우 대부재산의 매도인이 이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와 함께 우리 보훈(지)청에 나오시면 위 금액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.	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 ) 팩스번호 ( )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